

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10.11.26>
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(제14조제2항 관련)

1. 기술·기능 분야

자격 등급	검 정 방 법	
	필 기 시 험	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
기 술 사	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	구술형 면접시험
기 능 장	객 관 식	작업형 실기시험
기 사	객 관 식	작업형 실기시험
산 업 기 사	객 관 식	작업형 실기시험
기 능 사	객 관 식	작업형 실기시험

※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※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다.

2. 서비스 분야

자격 등급	검 정 방 법	
	필 기 시 험	실 기 시 험
전 체 등 급	객 관 식	작업형 실기시험

※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실기시험만 실시하거나,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.